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복궁관리소 -

2016. 1.

문 화 재 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선금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주의)	3
2. 회계관계 직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주의)	5
3.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관한 사항 (경고)	6
4.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7
5. 경복궁관리소 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	8
6. 물품의 정기채물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9
7. ‘경복궁 광화문 대표소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시정)	1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경북공관리소는 사적 제117호 「경복궁」 문화재 보호 및 관리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경북공관리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직원 현황은 총 126명(정규직 21명, 청원경찰 6명, 비정규직 99명)이고,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2012년 5월부터 처리한 경복궁 문화재 보호 및 관리실태, 주요 예산집행 현황, 국유재산 관리, 시설공사 추진 적정성, 물품관리, 일상감사 이행여부, 비정규 직원 관리·복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11. 23. 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5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1. 11.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경북공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경북공관리소는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라 계약 대금의 약 40%까지 선금을 지급하였다.

경북공관리소는 '경북공 CCTV 종합경비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 ○○○○○○○○(주)와 물품계약(계약기간 '14.8.13.~'14.12.10./계약금액 600,000,000원)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인 ○○○○○○○○(주)의 선금 지급 요청('14.9.18.)에 따라 계약금의 40/100에 해당하는 240,0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14.10.7.)하였으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상기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지급 각서로 대체하였고, 계약의 완료 등에 따라 선금 전액이 사용되었을 경우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하여 지급된 선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받지 않았다.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금액(원)	선금지급액(원)	비고
경북공 CCTV 종합경비시스템 개선사업	'14.8.13.~'14.12.10.	○○○○○○○○(주)	600,000,000	240,000,000	지급각서
경북공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정문정비공사	'13.7.11.~'13.12.4.	★★★★★(주)	237,000,000	88,000,000	선금금보증서
경북공 사정전 권역 및 박석 등 보수공사	'12.6.14.~'12.12.16.	주식회사 ♣♣	368,984,000	147,000,000	선금금보증서

또한, 상기와 같이 '경북공 사정전 권역 및 박석 등 보수공사'(계약기간 '12.6.14.~'12.12.16. /계약금액 368,984,100원)및 '경북공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정문정비공사'(계약기간 '13.7.11.~'13.12.4./계약금액 237,089,000원)와 관련하여 선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계약 완수 후 선금의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고 지급된 선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향후 선금 등의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공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계 직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국고금관리법」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는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공관리소는 2013.7.1. 인사발령으로 소장의 공석이 발생하자 경북공관리소장의 직무를 소속 ○○○행정사무관이 직무대리하며 기존 경북공관리소장의 담당업무인 재무관·물품관리관 등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행정사무관은 당시 지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무관 또는 지출관에 대해 별도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행정사무관으로 하여금 2013.7.1.~2013.9.3. 기간 중 재무관과 지출관의 직무를 겸직하도록 하여, 해당 회계직에 대해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고금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앞으로 회계직 임명 시 「국고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공관리소

경 고 요 구

제 목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공관리소에서는 '14.1.~'15.10월까지 일반수용비(201-01)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240-02/1,389,000원), 포상금(310/1,000,000원), 자산취득비(430-01/3,465,100원)로 총 5,854,100원을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일반수용비 예산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엄중 경고합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비고
경북공관리소	◇◇◇ ♠♠♠	'00.00.00. ~ 현재	기관●● ●●	경북공관리소	

경북공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경북공관리소는 2007년 홈페이지를 구축한 뒤 매년 홈페이지 시스템 및 서버 유지 보수용역을 실시하여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홈페이지 내 '미리 보는 경북공' 메뉴의 '경북공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인이 경북공 내 13개 전각 내부를 입체영상 화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5.11.26. 홈페이지 확인 결과 '경북공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 버전 7이하의 'Java가상머신'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화면을 통해 Java를 공급하는 Oracle의 공용 다운로드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해당 Oracle이 2015. 4월부터 Java SE 7의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않음에 따라 버전 7이하의 Java 가상머신을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재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버전 8이상의 Java가상머신에서는 '경북공 가상체험'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북공관리소는 상기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국민서비스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유지 및 활용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복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경북궁관리소 시설물 및 편의시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경북궁관리소

내 용

경복궁관리소는 조선시대 대표 정궁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총 11점이 위치하고 있고, 경내 전 권역을 사적 제117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적지로 내·외국인 5,575,708명(2014년 기준 내국인 3,657,760명, 외국인 1,917,948명)의 관람이 매우 많은 곳이다.

또한, 「궁·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에 따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야 하나 자체종합감사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복궁 경역 내 시설물 관리 미흡 현황】

- 청와대와 연계된 관람 지역인 ‘서울 육상궁’(사적 제149호) 관람데크 및 난간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 장애인 및 관람객 보행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
- 경복궁 ‘향원정’(보물 제1761호) 교대 상판(방부목)이 심하게 부식 및 파손되어 있고 연못 하부가 노출되어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
- 경내 녹산지역내 집하장에 각종 많은 혼합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사적지 위상 및 관람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정기적인 폐기물 처리 필요

조치할 사항

경복궁관리소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공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물품의 정기재물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경북공관리소

내 용

경북공관리소는 예산 및 보호기금을 집행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2015.11.26. 현재 총 802개의 물품을 보유·운용하고 있다.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 및 제35조(불용의 결정 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한 후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한 후 전자태그를 붙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경북공관리소는 2014.1.1.~2015.11.26. 감사 시점까지 예산 및 보호기금을 집행하여 데스크톱컴퓨터 등 총 65종 298개(729,529,50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2015.1.15.~2015.1.30. 기간 중 소속 직원 4명이 '2014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5.11.26. 전자태그 부착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2014.1.1.~ 2015.11.26. 기간 중 구입한 물품 298개에 대해 전자태그를 미 부착하였고, 분무기 등 현장사용 물품의 경우 대부분 전자태그가 탈락되어 있으나 재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다.

또한,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한 후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2014년 정기

재물조사 당시 고장 등을 사유로 사용하지 않던 전기톱 1대(2003년 구입) 및 노트북 2대 (2007년, 2008년 구입)를 활용품으로 구분하는 등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전자태그가 미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 조속히 전자태그를 부착하시고, 앞으로 물품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복궁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경복궁 광화문 대표소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경북궁관리소

내 용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광화문 대표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식회사 ●●●●과 계약체결(2014.12.23./114,256천 원)하여 2014.12.29. ~ 2015.12.18까지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5.11.27일 현재 내부 마감 및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경복궁관리소에 대한 자체감사기간 중 동 공사 현황을 확인한 바 주식회사 ●●●●은 현장여건 협소의 이유로 가설사무소 및 가설창고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미 시공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황】

(단위:원)

구 분	규격	당 초			변 경			증감	변경 사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계				831,632			0	- 831,632	
가설사무소	6×3×2.6m	1동	418,344	418,344	0동	418,344	0	- 418,344	미시공
가설창고	6×3×2.6m	1동	413,288	413,288	0동	20,938	0	- 413,288	"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자체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나, 추가 공사에

따른 물량의 증감이 발생될 사유로 인하여 자체종합감사일(2015.11.27.)까지 설계변경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비 산정결과 1,114,360원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경북공관리소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하여 1,114,360원을 조정하시고, 향후에는 계약 및 감독업무 처리 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